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60
----------	-------

발의연월일 : 2026. 01. 22.

발 의 자 : 김주영 · 박 정 · 임호선
김태선 · 박홍배 · 정태호
이주희 · 문정복 · 박수현
서영석 · 진성준 · 최혁진
장철민 · 안호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 · 관리 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 불합리하 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 · 관리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인정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 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